

## 참고자료

# ‘24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주요 질의응답

※ FAQ는 공고게시 기간 동안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오니  
본 공고에 신청하실 예비창업자 분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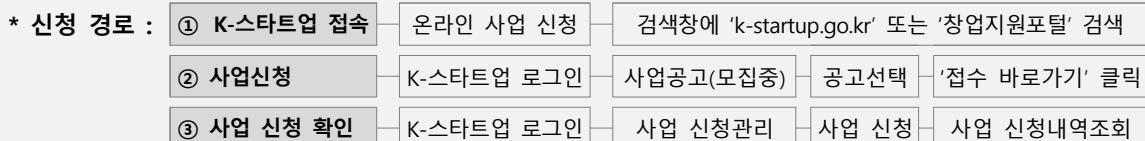
# [ 사업 신청 및 문의처 ]

## 1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 사업 신청은 K-스타트업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 완료 여부 확인은 K-스타트업 누리집 → '사업 신청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참고) 사업 신청을 위해 K-startup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해당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접수 마감일 이전에 회원가입 진행을 권장드립니다.

참고  
사항



## 2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은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되며,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 3 업무 담당자 ID로 사업을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 ☞ 불가합니다. 사업 신청 시에는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가 본인 ID를 통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4 사업 신청 시 과제명은 무엇을 쓰나요?

답변

- ☞ 사업 아이템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과제명은 창업 아이템(제품)이 한눈에 표현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시) OO기술이 적용된 OO기능의(혜택을 제공하는) OO제품·서비스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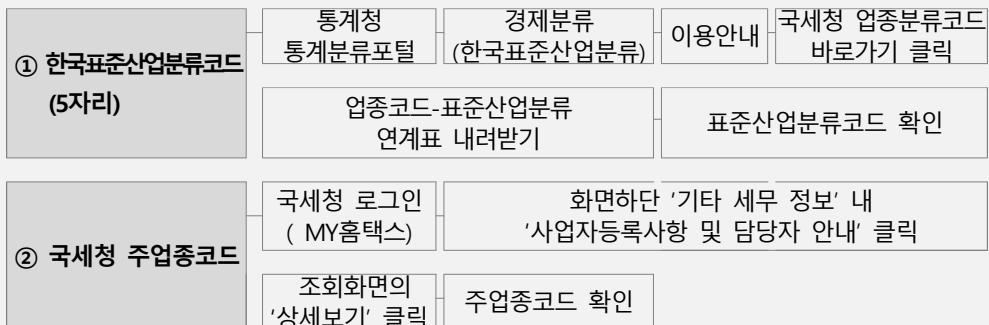
### 창업여부 기준표에서 이종업종과 동종업종은 무엇인가요?

답변

-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세분류→일치 시 동종업종', '세세분류→불일치 시 이종업종'으로 판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표준산업분류코드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주업종코드는 '국세청 MY 흠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참고  
사항

\* 확인 경로 :



## 6

### 사업 신청 시, 아이템이 기술 간 융복합으로 인해 단일 기술 분야를 선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 [전문기술분야]에서 신청하고자 하시는 창업아이템(사업)과 가장 근접한 기술 분야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7

### 팀원이 없는 경우, 사업 신청 시 인력정보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답변

- ☞ 팀원이 없으신 경우 공란으로 두시고, 저장 → 제출 완료를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8

### 사업 신청 시 작성하는 설문조사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나요?

답변

- ☞ 아닙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선택항목 중 해당되는 항목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 9

## 개명한 이름으로 실명인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 개명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화면에 표시된 이름이 개명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위의 내용이 정확하다면 실명인증을 연계하는 SCI평가정보(1577-1006)으로 유선 연락하여 시스템에 개명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정정요청하여 정정이 완료된 이후에 실명인증을 다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실명인증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국번없이)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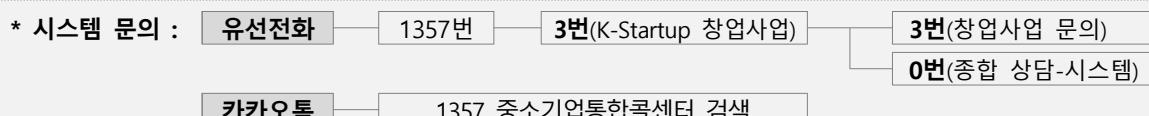
## 10

## 사업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답변

- ☞ 시스템과 관련한 문의는 ☎(국번없이)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해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신청 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문의는 모집 공고문에 기재된 유선 또는 K-스타트업 상담하기 등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11

## K-스타트업에서 상담하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 ☞ K-스타트업 접속 후, 상담하기 게시판을 통해 신청자가 직접 글을 작성하면, 해당 질의 사항에 대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확인 후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  
사항



## 12

## 사업 신청과 관련한 시스템 매뉴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 ☞ K-스타트업 누리집 접속 후 고객센터에 있는 온라인 매뉴얼 탭에서 「창업 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 사용자 매뉴얼」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참고) 사업 신청 전, 시스템(PMS) 이용 매뉴얼 숙지를 권장드립니다.

참고  
사항



13

## 본 사업의 절차, 운영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답변

☞ K-스타트업 누리집 접속 후 알림마당에 있는 공지사항 탭에서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전 지침에 명시된 창업기업 의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경로 : K-Startup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통합관리지침 검색'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11차개정)' 다운로드

14

## 사업 지원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해당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나요?

답변

☞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1357 혹은 모집공고에 기재된 유선 또는 K-스타트업 상담하기 등을 통해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 ]

1

### 현재 고용노동부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면 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유무를 확인하므로 공고일 이후 전액 변제하여도 사업 신청은 불가합니다.
- \* (참고) 임금 체불사업주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경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명단공개 - 체불사업주명단조회

2

###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 채무의 경우, 신청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수마감일('24.2.5.)까지 아래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예외 사항 >

참고  
사항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예외 대상
  - 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나.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예외 대상
  - 가.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나.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3

### 신규 계좌개설 등 은행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합니다.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과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 사업 신청 시 기본 자격조건이 있나요?

답변

☞ 네, 그렇습니다. ① 공고일('24. 1. 12.)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고, ② 법원 법인등기 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③ 법인의 발생주식 총수 50/100 초과 보유하지 않은 자이고 ④ 만 39세 이하 ('84.1.13. 이후 출생자)로 한정합니다. 위 자격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후 사실증명을 위해(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필요서류는 평가과정에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5

###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원도 기본 자격조건을 충족해야하나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한해서 4번 질문의 답변 ①~④의 신청 자격 조건이 해당되며, 팀원은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과 달리 팀원에 대한 가점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6

### 외국인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평가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급받은 외국인 등록증 및 재외국민거소증 등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지가 외국인 경우 사업 완료를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 이행 가능 여부를 재확인 후 사업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 현재 R&D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데,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창업지원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신청과 수행이 가능합니다.

8

## 과거 '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신청하였고,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 가능합니다. 과거의 사업 신청 이력이나 탈락 사실이 사업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

## 본 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기관의 겸직 인력입니다.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 불가합니다.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10

## 대표자로 지원 후, 다른 팀의 팀원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 불가능합니다. 1인 1번 신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지원 사업에서 중복 지원 적발 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1

## 국민연금 연체자 및 유예신청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 ☞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12

## 폐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 아래 세부 조건 해당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①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로,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예정자
  - ② 공고일로부터 폐업 3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했던 업종(주업종, 부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 가능
  - ③ 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일 경우, 공고일로부터 폐업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했던 업종(주업종, 부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 가능

\* (참고)

- ① 폐업 업종과 동종업종으로 창업 가능한 자  
→ 공고일로부터 3년이 초과된 폐업자  
→ 부도·파산의 사유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폐업자
- ② 공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폐업자는 폐업한 업종과 이종업종 창업만 가능

#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

## 1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한글 문서(HWP)로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 ☞ 아닙니다. 워드(Microsoft Word)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집공고문과 함께 안내드린 동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주의) 전년도 사업계획서, 타 사업 사업계획서, PPT 양식의 사업계획서 등은 제출 불가하며,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업계획서 분량의 제한이 있나요?

답변

- ☞ 사업계획서 작성 분량은 15페이지 내외로 작성해야 하며,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업로드할 수 있는 용량(50MB)이 제한됨에 따라 최대 업로드 용량 이내에서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3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한글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 ☞ 사업계획서는 한글 혹은 워드 파일로 제출하시면 PDF 형식으로 자동 변환됩니다.

## 4 사업계획서 작성 시 이미지를 삽입해도 되나요?

답변

- ☞ 사진, 표, 그래프 등 모두 삽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용량(50MB)이 제한되어 있으니 고화질의 사진을 과도하게 삽입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5 현재 제품(서비스)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품(서비스)가 개발 중이어도 사업계획서 3페이지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 ☞ 제품(서비스)을 개발 중인 경우, 설계도나 완성된 제품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으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6

## '23년에 타 창업지원사업 수행 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작성 →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 ☞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아이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동일하다면, '자격요건 검토' 단계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서 중복률 검토 단계'에서 탈락하실 수 있습니다.

7

## 사업계획서 양식을 변경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 ☞ 사업계획서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모집 공고문과 함께 안내 드린 사업계획서의 목차, 세부 항목을 임의로 변경 및 삭제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 가점 대상자인 경우,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 ☞ 가점 대상자인 경우, 사업계획서 양식 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K-스타트업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한 사업 신청·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모집 마감일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참고) 가점 세부 항목은 본 모집공고 상의 '평가 및 선정'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 공공기술이란 무엇이며, 기술 탐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 ☞ 대학, 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하여 소유(보유)하고 있는 기술(산업재산권 등)을 말합니다. 공공연구기관은 기관 소속 연구자 (직원 등)이 개발한 기술의 권리보호(확보) 등을 위해 관련 법에 의거 일정 심사(출원 등)을 거쳐 기술에 대한 권리권을 보장(등록)받습니다. 공공기술 활용을 위한 검색 플랫폼 현황 예시를 본 사업 공고문 2페이지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비 ]

##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인건비는 전년도 근로소득기준(최근 3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으로 계상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법정최저 급여와 임금근로 시간 정보시스템(<http://www.wage.go.kr>)의 업종별·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2 선정 전 집행한 인건비를 협약체결 이후 소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사업화 자금은 협약 기간 내 주관기관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된 사업비에 한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협약체결 이후에 4대 보험에 가입된 기준, 신규고용 인력 모두에 대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3 사업비 집행 비목 중 비목 간의 비율도 정해져 있나요?

답변

☞ 그렇지 않습니다. 비목 간의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4 사무실의 서랍, 책상 등을 정부지원금으로 구매가능한가요?

답변

☞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사업비 집행이 불가합니다. 단, 시제품을 개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일부 공정을 외부업체에 의뢰·제작하는 비용 등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 5 사업 수행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 회사 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사업비는 협약 기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협약종료 후에는 잔여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6

## 대표자의 자녀 인건비를 정부지원금으로 집행 가능한가요?

답변

☞ 불가능합니다. 창업기업 대표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소속직원의 경우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단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비(여비, 교육훈련비 등)는 사업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집행이 가능합니다.

7

## 제품 광고비를 정부지원금을 집행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합니다. 협약 기간 내에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등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평가 · 선정 ]

## 1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답변	☞ 서류평가, 발표평가 결과는 단계별 평가 종료 후 통과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신 주관기관에서 개별 안내(문자 또는 이메일)를 드립니다.							
참고 사항	* 평가절차 : <table><tr><td>① 요건검토 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td><td>▶</td><td>② 서류평가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td><td>▶</td><td>③ 발표평가 프로그램 적정성 등 발표 (30분 이내)</td><td>▶</td><td>④ 최종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확정</td></tr></table>	① 요건검토 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	▶	② 서류평가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	③ 발표평가 프로그램 적정성 등 발표 (30분 이내)	▶	④ 최종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확정
① 요건검토 신청 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	▶	② 서류평가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선발	▶	③ 발표평가 프로그램 적정성 등 발표 (30분 이내)	▶	④ 최종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 확정		

## 2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 정부지원금은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및 창업기업 평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신청하신 사업비를 초과하여 최종 사업비가 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3 평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합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 사업계획서 수정은 불가합니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발표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 4 서류평가 점수가 발표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 서류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의 발표평가 대상자를 선발하며, 발표평가를 통해 취득한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선정자가 결정됩니다.
----	---

## 5 평가 기준이 있나요?

답변	☞ 평가는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타 기업/기관과 협업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공고문의 '평가 및 선정'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6

## 평가는 누가하나요?

☞ 창업진흥원 평가관리시스템 Pool에 등록된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선정평가 가이드에 따라 다수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평가를 실시합니다.

### < 평가위원 자격 기준 >

####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 요령(고시) 제 11조(평가위원회 위원 후보단의 구성)

##### 1. 산업계

-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사람

##### 2.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 3. 연구계

- 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
- 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갖춘 사람
  - 5.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6.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
  - 7. 그 밖에 지원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후보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답변

7

## 대표자가 부재중인 경우, 발표평가에 타 직원이 대신 발표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야 합니다. 대리평가 방지를 위해 평가 전 인적사항 확인 및 신분증 얼굴 대조 등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 특허 등 핵심기술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평가위원 등을 통해 유출될 가능성은 없나요?

☞ 평가를 시작하기 전 모든 평가위원은 보안서약서를 의무로 작성하며, 주관 기관별 평가위원 사전교육, 평가장 내 사진촬영, 사적통화 금지 등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서 보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